
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63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4.

발 의 자 : 우상호 · 유은혜 · 김현권

전혜숙 · 서영교 · 김영호

조승래 · 김정우 · 추혜선

이정미 · 신경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,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.

이에 「과학기술기본법」과 동일하게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과거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

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8조).
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”을 “기업, 연구책임자·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”으로, “5년”을 “5년(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4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5. ~ 7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<u>우</u>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